

미국 등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함에 있어 당사국인 한국 자체의 책임 문제의 제기 없이는 책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2. 논의의 범위

국내에서(절차나 내용 모두) 가능한 수단 모두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국내법절차를 기초로 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며(사회운동의 내용 등은 제외)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 모두를 검토하며 순수하게 이론적인 가능성만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법적 접근에 있어 고려하는 원칙

가. 과거청산작업의 일반 원칙의 적용

이 문제 역시 과거 청산작업의 하나이고 가장 원형적인 사건의 하나이기도 하다.

과거 청산에 있어 들어지는 원칙

- 1) 진상 규명
- 2)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
- 3) 책임자 처벌
- 4)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모두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 최초의 학살행위 뿐 아니라 그 후의 파생된 인권침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한다.

(접근방법의 별개성은 별도로)

다.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병행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각 방안을 병행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실정법

법 체계 상 현실화가 가능한 방안을 고려하고 실정법 체계를 전제로 한 방안을 주로 고려한다. 동시에 국제법원칙의 국내법원(法源)으로의 전화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우리 실정법 질서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제법적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마. 가해 민간인들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책임 문

제를 중심으로 한다.

바. 유형(類型)별 접근

민간인 학살 사건의 4가지 유형(4.3., 형무소 안에서의 처형, 예비검속후 처형, 전투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진행이 필요하다.

4. 입법에 관하여

가.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이 문제의 범주에 들어 있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입법으로는 1996년 제정된 거창특별법과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이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어 내기 힘들다.

1) 포괄적 입법의 부재

위 각 유형의 학살사건은 그 원인이나 진행경과 등에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각 사건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접근과 동일한 원칙에 의한 처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 따른 입법을 하므로 인하여 입법 범위에 들지 아니한 다른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해결도 국지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어 낼 수 없다.

2) 법률의 내용 역시 극히 부실하다.

두 법률 모두에 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먼저 거창특별법을 보면

- ①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진상규명이 실제적으로 사망자, 유족의 결정에 국한된다: 가해자, 개해경위, 사건의 구체적 경과 등을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③ 유족의 신고를 조사의 전제로 하고 있어 신고되지 아니한 인적 피해 조사가 불가능하다,
- ④ 필요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 ⑤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실제 호적 정비 이외에 별 조치가 없다.
- ⑥ 피해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합동묘역관리사업 정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국가의 예산지원이 선택사항이다.
- ⑦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의 추가적인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입법 등이 가능한 열린 입법이 아니라 현행 법 규정만으로 최종적인 조치를 상정한 폐쇄적인 법
- ⑧ 결정기구가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공정성,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⑨ 위원회가 행정부 공무원이 과반수를 점하여 행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 ⑩ 유족 범위 역시 너무 좁다. 유족 등록 시한도 극히 짧다.

4.3. 특별법의 경우 위 문제 중 일정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진상조사사업의 전개, 일정지원금의 지급, 대정부 건의사항 의결 가능, 자료관 조성,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의 상대적 축소)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나. 입법안의 마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입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아래에서 보는 헌법소원이 인용된다하여도(작용대상의 확대) 입법내용의 불비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입법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은 결국 입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다.

위 법의 시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면서도 위 법에 규정된 사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 법의 내용에는

- 1) 국가책임의 명시가 필요하다
- 2) 포괄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조사에는 그 원인, 사건 이후 연결되는 인권침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 3) 피해자. 피해 내역 뿐 아니라 직접 가해자, 가해자에 대한 명령자 등도 밝혀야 한다. 가해자의 처벌은 별론
- 4) 충분한 조사가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5) 국가의 정보 제공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의 규정과 아울러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6) 위원회는 독립적, 전문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7) 실재적인 명예회복책과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충분한 활동기간이 전제되어야 하고

9) 유족의 신고권과 정보제공권이 있어야 하나 유족의 신고가 진상조사 등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10)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과 국가에 대하여 건의할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 입법 작업을 위한 접근

1) 입법청원

이러한 입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권(헌법 제 26조, 청원법, 국회법)의 활용이 가능하고, 입법청원권의 행사 시기와 방법은 정책적이고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당에 대한 요구와 설득 작업, 청원 소개 의원의 조직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2) 대부분의 입법이 정부 입법이고 정부의 법률안에 대한 의사가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입법 연관 활동도 필요하다.

3) 4.3.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

5. 진상조사를 위한 접근

가. 입법 청원 등의 진행과 별도로 97년 제정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접근권을 이용하는 방안 즉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공개를 시도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난점

1)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하여도 정보공개법 제 4조 3항,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군 관계 자료의 공개가 허용된 확률이 높지 않다.

- 2) 정보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관리체계 자체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 어떤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
- 3) 공개되더라도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어(제7조 1항 6호) 가해자 등의 식별이 곤란하다.
- 4) 비공개 정보의 시한 경과로 인한 공개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미국 문서보관소의 비밀해제 문서에 대한 접근

다. 기존 법률의 진상조사권을 통한 접근

6. 헌법소원

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 현재 법령이 제정된 거창사건, 제주4.3사건을 제외한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작위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청구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구성 (예시)

- (1) 청구인 : 해당사건의 피해자, 유족
- (2) 피청구인 : 국회
- (3) 청구취지 : “000사건(구체적 일시, 장소, 과정 실시)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호적정정, 피해배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 (4)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5) 침해원인 : 000사건에 대한 --- 입법부작위 (청구취지와 동일)
- (6) 청구이유
(전제) 1) 입법 의무의 존재
2) 입법행위의 부작위

○ 입법행위의 부작위문제 검토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구별)

(1) 학설상 구분(정종섭 교수)

- 단순입법부작위 : 입법의무 없음
- 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의무가 있으나, 국회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입법의무의 불이행)
- 부진정입법부작위 : 입법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국회가 입법을 했으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여 부분적으로 입법부작위가 존재함 (=입법의무의 불완전 이행)

(2) 헌법재판소 판례상 구분

“널리 입법부작위에는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경우와 이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은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89. 7. 28. 89헌마1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憲法訴願)

(3) 검토

제주4.3사건특별법이나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에서 진상조사+명예회복(제주), 명예회복(거창)의 제한된 구제만을 규정함으로써 불충분한 입법임은 별론, 위 법조항의 확대해석으로 제주4.3이나 거창사건 이외의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 법을 이용하여 부진정입법부작위임을 항변하고 있다(또는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가지 사례를 검토해 본다.

첫째, 문경이나 함평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해 국회는 답변서에서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에서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를 특별히 공간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문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경학살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입법을 부작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 ① 애초 위 법은 거창과 인근 지역의 학살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안되었던 점
- ② 전국 각지의 민간인 학살 중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으로 공적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거창과 인근 지역 사건 뿐이라는 점,
- ③ 따라서 “등”이라는 거창 인근인 함양, 산청 등지의 사건을 위 거창특별법이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 ④ 사망자 및 유족에 관한 결정을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는 시행령에 의한 유족등록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 할 뿐 다른 지역의 양민학살사건이 위 2조 1호의 “거창사건 등”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심사를 할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 ⑤ 위 법의 시행을 실제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시행령의 각 조항이 거창과 인근 지역의 학살 사건에만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점-- 시행령 제 11조 등,
- ⑥ 실제 위 법시행중인 1996. 7. 4. 함평양민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위 법에 따른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한 점,
- ⑦ 제주 4.3.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한 점
- ⑧ 거창과 인근지역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려 하였다면 다른 사건이 양민학살 사건인지 그 성격을 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법은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성격을 전제로 한 유족 등록 절차만을 규정한 점
- ⑨ 당시까지 정부가 인정하는 양민학살 사건은 거창과 그 인근지역 뿐으로 다른 지역 건은 입법 시 구체적으로 고려될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
- ⑩ 위 법이 유족들의 신청기간을 제정 당시부터 단기간내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모든 처리가 종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실질적인 한시법이라는 점-- 신고기간이 60일, 실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180일
- ⑪ 국회 측 답변대로 위 법이 지역적으로도 제한되지 아니하였고, 문언대로 시기적으로도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한국전쟁과 관련되지 아니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예를 들어 울진 공비침투 사건이라든지 1.21.사건 등) 위 법의 한시법적인 성격과 배치된다는 점
- ⑫ 전 지역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는 법률 명칭
- ⑬ 위 법률에 의하여 (제한적 의미로나마) 구제된 것은 실제 거창과 그 인근지역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은 현재 문제되는 전국각지의 다양한 유형의 민간인학살 사건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정당하다.

따라서 위 법의 존재를 이유로 '입법의무의 이행'을 주장하며 다른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둘째, 한국전쟁시 1950. 8. 20. 전후하여 제주도에서 예비검속령에 의해 주민 200여명이 학살된 '백조일손사건'등의 예비검속령에 의한 학살 건이나 그 이외 형무소 안에서의 처형 건 등에 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와 같은 논리로 국회에서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을 이유로 부진정부작위를 주장할 경우, 위 백조일손사건은 공비도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아니라, 전투가 실제 벌어지지 않았던 비작전지역에서 경찰서의 예비구금에 의하여 학살된 사건이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경찰서에 구금한 민간인을 해병대와 방첩대가 명령을 하여 학살을 하였고, 당시 전시라서 전국이 작전지역이라고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비도벌을 표면상 이유로 했을 수 있으므로 앞서의 문경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백조일손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제한도 검토되어야 한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백조일손사건은 ① 1947. 3. 1 - 1948. 4. 3의 소요사태에 해당되지 않고, ②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비검속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가서 학살당한 사건이므로 위 법에서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③ 아울러 역사적, 문언적 의미에서 '제주4.3사건'은 특정한 일련의 사태를 해석하는 것으로 통용되므로 이에 제한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입법의무 검토

(1) 헌법재판소 판례

“무릇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 이를 방치할 것인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세계관적 고려 하에서 정해지는 사항인 것이며, 따라서 일반국민이 입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권을 향유하고 있음은 별론이로되 입법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임을 다탁하여 이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아 입법당국으로 하여금 입법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지위에 갈음하게 되어 헌법재판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생각컨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며, 이 때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헌재 1989. 3. 17. 88헌마1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憲法訴願)

(2) 주장가능한 내용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없다고 보이므로, 헌법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도출해내야 한다. 국가의 보호의무의 근거는 아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헌법 제10조 해석상 인정되는 생명권, 신체의 불훼손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나) 평등권

(다) 알권리(신원권), 명예회복과 배상등을 구할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라) 국제인권법상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진실을 알 권리,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발방지를 위한 명예회복, 배상 등의 사후조치를 취할 의무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인권법도 편입

○ 헌법소원의 전망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이유로 헌법소원이 입법의무의 성격문제로 각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어쨌든 문언해석상 위 법 2조 1호가 지역과 시기를 국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인학살사건 중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입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해석할 여지가 있고,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엄격한 태도에 비추어 대부분의 사건을 거창사건등특별법이나 제주4.3사건특별법 등을 이유로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해석하여 부적법 각하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의 과정에서는 부진정입법부작위 여부에 관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사건의 전말에 대한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예를 들어 실제 위 법률 제정 직후의 언론 매체 해설 기사 등으로 입법의사와는 별론으로 일반 국민은 위 법을 지역적, 시기적으로 제한적인 의미의 법률로 받아들인 점 등을 소명)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백한 방식의 법률구성이므로 다른 어떤 수단보다 대국민 홍보효과가 있고, 국회에 대한 입법(청원)활동에서 일정한 근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이하에서 검토하는 다른 헌법재판 대응수단을 병행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과 제주4.3사건특별법을 대상으로 하여 위 법이 거창이나 제주이외의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사실상 적용배제함으로써 피해자 및 유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

○ 침해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 생명권, 신체불훼손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등

○ 현실적 문제점 - 청구기간의 문제

(1) 법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제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헌재 1990.6.25. 89헌마220 地方公務員第31條,第61條에대한憲法訴願) (다만,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 대해서는 헌재 1996.3.28. 93헌마198결정으로 제외되었다)

(3) 검토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은 공포일이 1996. 1. 5.이고, 제주4.3사건특별법은 공포일이 2000. 1. 12.이다. 그런데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경우 이는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해석되므로 이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 헌법소원 제기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위 청구기간에 대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간도과임을 주장하여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다. 아직까지 법령헌법소원에서는 인정된 예가 없으나, 다른 유형의 헌법소원에서 아래의 판시내용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을 도과한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7.29. 89헌마31 公權力行使로인한財産權侵害에 대한憲法訴願)

참고로 다음의 견해도 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작위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데 반해, 부진정입법부작위로 해석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구제로 갈 경우 청구기간이 제한되어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진정입법부작위인지 부진정입법부작위인지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기본권 구제상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자는 견해이다 (정종섭, 헌법재판연구(1), 286면).

다.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 거창과 제주4.3사건 이외의 다른 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위 두가지 법에 입각한 구제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해 재판에서 위 두 법이 다른 사건도 포함할 수 있는 양 형식상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법규정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점이나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미비한 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으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하고, 이를 기각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구성 (예시)

- (1) 청구인 : 해당사건의 피해자, 유족
- (2) 청구취지 :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함
- (3) 당해사건 : 00법원 00호사건
- (4) 당사자 : 원고, 피고
- (5) 청구대상 : 위 법 제00조 (청구취지와 동일)
- (6) 청구이유

○ 적법성요건 검토

(1) 법규정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신청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견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청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이유를 달리하게 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요건인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12.24. 92헌가8 刑事訴訟法第331條但書規定에 대한違憲審判)

(3) 검토

위헌법률심판(또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헌으로 의심되는 조항과 관련된 제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먼저 광범위한 방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거창사건 이외에도 적용이 된다는 국회의 답변까지 있는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거창이외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유족이 위 법에 의한 유족등록, 호적등재, 재정지원 등을 신청하고, 기간도과나 법률이 정하는 해당사건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경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 진행 중 위 법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한다.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위와같은 경우 행정기관은 기간도과를 이유로 형식적 심사만으로 각하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유족등록기간의 제한 이외에 실제 문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해석문제나 피해구제를 제한한 동법 제3조, 제6조, 제8조 등을 다투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설령 다툼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나 제6조, 제8조의 피해구제가 불완전입법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의 구조와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심판은 앞서 제시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부진정입법부작위임을 이유로 각하될 경우의 예비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미 거창사건등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거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유형의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일정한 판단(부진정입법부작위로 판단하여 각하한 경우)을 하였기에 이와 모순된 판단을 하기 곤란하다는 부담감이 있으므로 일정한 부분에서 승소가능성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7. 기타

가.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에 불구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나 관할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견해

-- 이근안 건 등에 있어 주장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선례가 있어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작업이 가해자의 처벌을 위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원칙에 관하여

현재 사법부가 민사 소멸시효를 금과옥조처럼 존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의 경우보다 가능성이 더욱 희박

다. 가해자들의 훈,포상 취소 청구

상훈법 제 8조1항 1호-- 상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

[참고]

1. (대상)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형

가. 제주4.3사건 : 1947. 3. 1시작, 1948. 4. 3.

나. 전쟁발발시 형무소 처형 : 대전 등

다. 예비검속령에 의한 학살 : 제주 백조일손 등

라. 전쟁당시 양민과 공비를 구별하지 않은 학살

(1) 노근리 : 미군에 의한 학살

(2) 거창, 문경, 함평 등

2. (관련법령) 피해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현행 법률

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1) 법령제정 2000. 1. 12.

(2) 시행일 2000. 4. 12.

(3) 대상 :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동법 2조 1호)

(4) 조치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진상조사, 희생자 심사, 명예회복, 위령탑건립, 호적등재), 생존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5) 기타 : 신고처를 공고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신고 (시행령 8조 2항)

나.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1) 법령제정 1996. 1. 5.

(2) 시행일 1996. 4. 5.

(3) 대상 : "거창사건등"이라 함은 공비도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동법 2조 1호)

(4) 조치 :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망자 및 유족 결정, 명예회복, 위령탑건립), 호적등재

(5) 기타 : 유족의 등록은 시행일부터 90일 이내 (동법 제7조 3항)

거창사건 등 특별법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6년 1월 5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김 우 석
내무부장관	
국무위원	이 양 호
국방부장관	
국무위원	김 기 재
총무처장관	

● 法律 第5.148號
居昌事件等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
特別措置法

第1條(目的) 이 법은 居昌事件등과 관련하여 死亡한 者와 그 遺族들에게 가해진 不名譽에 대하여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國民和睦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居昌事件등"이라 함은 共匪討伐을 이유로 國軍兵力이 作戰修行중 住民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遺族"이라 함은 居昌事件등에 의하여 死亡한 者(이하 "死亡者"라 한다)의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死亡者의 兄弟姊妹를 말한다.

第3條 (居昌事件等關聯者名譽回復審議委員會) ①이 법에 의한 死亡者 및 그 遺族의 決定과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居昌事件等關聯者名譽回復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② 委員會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死亡者 및 遺族決定에 관한 사항
 2. 死亡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3. 묘지단장, 慰靈祭禮 및 殯葬塔 건립에 관한 사항
- ③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5人이상의 遺族代表를 포함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關係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委員會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居昌事件等關聯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 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市·道知事所屬하에 居昌事件等關聯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② 實務委員會는 委員會 1人을 포함한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당해 市·道知事가 되고 委員은 4人이상의 遺族代表를 포함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한다.

第5條(불이익 處遇禁止) 遺族은 居昌事件等關聯者의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戶籍登載) 居昌事件등 당시 戶籍簿 消失로 戶籍登載시 登載가 漏落된 者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規定에 따라 戶籍에 登載할 수 있다.

第7條(遺族의 登錄) ①第2條第2號의 規定에 정한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證憑書類를 첨부하여 實務委員會에 遺族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 遺族의 登錄順序는 다음과 같다.

1. 配偶者
2. 子女(子女가 死亡한 경우 그 財産相續人)
3. 父母 또는 親父母
4.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死亡者의 兄弟姊妹

③ 遺族의 登錄은 이 법 施行日부터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財政支援) 政府는 遺族의 合同墓域管理事業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附 則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居昌事件等關聯者의名譽回復에 관한
特別措置法 裁定理由 및 主要骨子

居昌事件등 공비도발을 이유로 한 國軍兵力의 작전수행중 희생된 住民과 그 遺族의 名譽回復을 위하여 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居昌事件等關聯者名譽回復委員會를 設置하도록 하고, 사건당시 戶籍簿의 消失로 戶籍登載가 누락된 者는 同 委員會의 規定에 따라 戶籍에 登載할 수 있도록 하며, 遺族이 추진하는 合同墓域管理事業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支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法律 第6,117號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 관한特別法

第1條(目的) 이 법은 濟州4·3事件의 真相을 糾明하고 이 事件과 관련된 犧牲者와 그 遺族들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民主發展 및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濟州4·3事件"이라 함은 1947年 3月 1日을 기점으로 하여 1948年 4月 3日 발생한 騷擾事態 및 1954年 9月 21日까지 濟州道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事件을 말한다.
2. "犧牲者"라 함은 濟州4·3事件으로 인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後遺障礙가 남아있는 者로서 第3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濟州4·3事件의 犧牲者로 결정된 者를 말한다.
3. "遺族"이라 함은 犧牲者의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및 直系 尊卑屬을 말한다. 다만, 配偶者 및 直系 尊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兄弟姉妹를 말한다.

第3條(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 濟州4·3事件의 真相을 糾明하고 이 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濟州4·3事件 真相調查를 위한 國內의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真相調查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戶籍登載에 관한 사항
8. 기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 ①委員會의 議決事項을 실행하고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濟州道知事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者名譽回復實務委員會(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實務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처리한다.

- 1.犧者와 遺族의 被害申告 접수에 관한 사항
2. 被害申告에 대한 調査에 관한 사항
3.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委員會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實務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濟州道知事が 되고 委員은 關係公務員과 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實務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5條(不利益 處遇 禁止등) ① 누구든지 濟州4·3事件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證言할 수 있다.

②犧者 및 그 遺族은 濟州4·3事件犧者와 그 遺族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第6條(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 ① 委員會는 그 구성을 마친날부터 2年 이내에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蒐集 및 分析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委員會 또는 實務委員會는 第1項의 資料蒐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關係機關 또는 團體"라 한

다)에 대하여 關聯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關聯機關 또는 團體는 濟州4·3事件 關聯資料의 發掘 및 閱覽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政府는 第2項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資料를 外國에서 보관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國家의 政府와 正실히 交涉하여야 한다.

第7條(眞相調査 報告書 작성) 委員會는 第6條第1項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月 이내에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眞相調査報告書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濟州4·3事件眞相調査報告書作成企劃團을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第8條(慰靈事業) 政府는 濟州4·3事件 犠牲者를 慰靈하고 歷史的 의미를 되새겨 平和와 人權을 위한 教育의 場으로 활용하며 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費用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慰靈墓域 造成
2. 慰靈塔 建立
3. 4·3使料館 建立
4. 慰靈公園 造成
5. 기타 慰靈關聯事業

第9條(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 ① 政府는 犠牲者중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介護 또는 補助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게 治療와 介護 및 補助裝具 購入에 소요되는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지급할 수 있다.

②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を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③ 醫療支援金 및 生活支援金の 지급범위와 금액의 算定 및 支給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犠牲者와 그 遺族의 申告處 設置 및 公告) 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大韓民國 在外公館에 犠牲者와 그 遺族의 濟州4·3事件 관련 被害申告를 접수받기 위한 申告處의 設置를 요청하고, 設置된 申告處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1條(戶籍登載) 濟州4·3事件 당시 戶籍簿 燒失로 戶籍登載가 漏落되거나 戶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결정에 따라 大法院 規則이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戶籍에 登載하거나 戶籍의 기재를 正正할 수 있다.

附 則

이 法은 공포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3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업무등)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의 선정
2. 의문사한 자에 대한 조사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3급이상의 공무원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역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진정인의 적격 등) ①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0조(진정의 방식)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2.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제21조(진정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 하여야 한다.

1.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 한다.

제22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진정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그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4.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관계자료나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위 장소에서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소속직원이 제1항제2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시설, 단체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3항, 제5항의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⑬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사무국 소속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⑭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4조(조사의 기간) ①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3월 기간의 범위안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진정의 기각)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사실이 아닌 경우
2.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실확인·구제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구제조치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요청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위원 증인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제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고등) ①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건의 진상등에 관하여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문사 사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의문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③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시까지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②위원회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검찰관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제 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6조(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7항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